

1. 개정이유

‘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(관계부처 합동, ’24.12.)‘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·생산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공자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하고, 행정기관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함 (안 제42조)

나.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한 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서·벽지지역, 교통체증지역 등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로 함(예시: 벽지지역, 도서지역, 터널공사현장,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) (안 제43조제1항)

다.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택지지구의 공공주택건설사업, 총공사비 1,000억원 이상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및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주변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전량 공급 및 인근 현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현장배치플랜트를 원활

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
(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,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6호 중 ““현장배치플랜트”란 시공자가”를 ““현장배치플랜트”란”으로 한다.

1. “발주자”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.

1의2. “발주청”이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.

제3편제2장의 제목 “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”를 “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품질 관리”로 한다.

제42조의 제목 “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)”을 “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현장배치플랜트”를 “제1항에 따라 현장배치플랜트”로, “시공자는”을 “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콘크리트의 생산·공급을 위해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

수 있다.

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(이하 “인·허가기관”이라 한다)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”를 “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트럭믹서”를 “콘크리트믹서트럭”으로, “지역인 벽지지역·도서지역·교통체증지역 등”을 “경우(예시: 벽지지역, 도서지역, 터널공사현장,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”을 “발주청”으로, “공급받을”을 “적기에 공급받을”로, “레미콘의”를 “건설공사의”로, “판단하여”를 “판단하여 설계도서 또는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건설공사”를 “건설공사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시공자”를 “발주청 또는 시공자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경우 시공자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”를 “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”으로, “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1을”을 “일반 레미콘 소요량의 2분의1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
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으며, 해당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공사현
장(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발주청이 시행 또는 시공자가 공사하
는 현장을 말한다)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
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
 2.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(도급자
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, 토지 등의 취득·사용
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다) 1,000억원 이상인 경우
 3.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의 원활한 설치 및
운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주자는”을 “발주
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”으로, “따라 실시된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
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”를 “따른 사항을 점검하고”로 한다.

- ①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
을 준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레미콘을 생산·공급해야 하며, 이 업
무지침 제40조에 따라 품질관련 기록물을 관리해야 한다.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발주자”란 「건설기술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,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	1. “발주자”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.
<신 설>	1-2. “발주청”이란 「건설기술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.
3. ~ 15. (생략)	3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“현장배치플랜트”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·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.	16. “현장배치플랜트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.
17. ~ 24. (생략)	17. ~ 24. (현행과 같음)
제2장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	제2장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품질 관리
제42조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) <신 설>	제42조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등) ①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

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려는 시공자는 「건축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하여 야 한다. <신 설>	사 품질확보 및 원활한 콘크리 트의 생산·공급을 위해 현장배 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배치플랜 트-----자는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· 인가·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(이하 “인·허가기관”이라 한 다)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 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제43조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 건)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 미콘을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생산·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 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 우 해당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「대·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	제43조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 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발주청 또는 시공자 는 현장배치플랜트를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

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·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.

1.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·도서지역·교통체증지역 등

2.·3. (생략)

4.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 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

② 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량을 충분히 생산·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

1. -----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-----
--- 경우(예시: 벽지지역, 도서지역, 터널공사현장,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발주청-----
----- 적기에 공급받을 -- 건설공사의-----
----- 판단하여 설계도서 또는-----

② -----
----- 건설공사-----
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발주청 또는 시공자-----

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공자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1을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-----
----- 일
반 레미콘 소요량의 2분의1까지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으며, 해당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공사현장(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발주청이 시행 또는 시공자가 공사하는 현장을 말한다)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

<신 설> 제44조(공동협력) ①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 ② 관할 시·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을 받은	된 공공주택건설사업 2.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(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, 토지 등의 취득·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다) 1,000억원 이상인 경우 3.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삭 제>		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레미콘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즉시 조정하여 시공자의 해당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 제45조(품질관리) ①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는 영 제95조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. ②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, 이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.	제45조(품질관리) ①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레미콘을 생산·공급해야 하며, 이 업무지침 제40조에 따라 품질관련 기록물을 관리해야 한다. ② -----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----- -----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	--	---	--